

《2022. 5월 1차》
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2022년 신년화두 慎終謨始 (신종모시)

『맺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』



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

청렴^韓수원

“공무원은 관용차량·선박·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,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해서는 아니된다.”

관 련 내 용

○ 개 요

- 공무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,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이득(부가서비스)의 경우도 공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는 원칙

○ 내용해설

- 공용물(재산) :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,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(예시 : 청사, 관사, 공용차량 등)
- 예산 사용에 의한 부가서비스 : 항공마일리지, 기관 법인카드 등으로 적립된 포인트 등
- 사적인 용도의 사용·수익 :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물(재산)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

위 반 예 시

-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
- 관사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
- 직무와 상관없이 인근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차량을 이용
- 공용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
-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내어 간부 공무원의 개인 별장 신축현장에 사용
- 공공기관 연구원이 공무여행으로 적립한 마일리지 일부를 배우자의 항공권 구매에 사적 사용

부조리
신고

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



클릭, 케이휘슬 연결)

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